

#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김용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2월 1일

발 의 자 : 김용연, 경만선, 이병도,  
문장길, 이광호, 김기덕,  
신정호, 장상기, 김희걸,  
이세열, 김정태, 권영희,  
김혜련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
- 이에 지역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현행 조례의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, 시민의 균형 잡힌 삶 향상에 중점을 두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- 나. 조례 목적에서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자 함(안 제1조)

- 다. 용어의 정의에서 “격차”의 정의를 삭제하고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명시함(안 제2조제2호, 제2조제3호)
- 라. 현행 조례에서 지역별 격차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함(안 제3조제1항, 제3조제2항, 제3조제5항, 제5조제1항, 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, 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, 제8조, 제8조제1항, 제10조제1항)
- 마.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약을 위해 복지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, 시장에게 복지실태조사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결과 및 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(안 제9조, 제9조제1항, 제9조제2항, 제9조제3항, 제9조제4항)
- 바.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시행을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, 제10조제3항)
- 사.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,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함(안 제11조, 제12조~제26조)
- 아.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함(안 제1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생활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”를 “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서울시민복지기준”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, 돌봄, 건강, 주거,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·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정책은 자치구 및 생활권역이나 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”를 “정책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정책은 지역별 격차 해소와 더불어”를 “정책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5항 중 “시는 지역에 따른 격차의 수준”을 “시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,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격차개선보고서의 작성과 시책을”을 “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와 관련 사업에”를 “삶의 질 향상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모든 시민은 지역 여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전제로 지역에 따른 격차해소와”를 “모든 시민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삶의 질 향상 및 격차와”를 “삶의 질 향상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”를 “시장은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“균형 잡힌 삶의 질 및 격차해소를 위한 목표의 설정”을 “목표의 설정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”를 “삶의 질 향상을 위해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“실태조사”를 “자료조사 및 결과공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부터 제2항 중 “실태조사를”을 “복지실태조사를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③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.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시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”를 “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수준이나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민·가구를 위한 집중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③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시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11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 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7조를 제1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생활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(생 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"격차"란 서울특별시 자치구(이하 "자치구"라 한다) 및 생활권역이나 동 단위에서 소득, 돌봄, 건강, 주거, 교육 등 여러 복지 영역의 자원의 제공 및 배분, 접근 및 이용에서의 질적·양적 차이와 그 결과로 나타난 생활상태의 차이를 말한다.</li> <li>3. "서울시민복지기준"이란 2012년 10월 12일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,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합의에 따른 공동발표로 이루어진 기준 내용을 말한다.</li> </ol> <p><b>제3조(기본원칙)</b> ① 시의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자치구 및 생활권역이나 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.</p> <p>② 시의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지역별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---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----- -----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 &lt;삭 제&gt;</li> <li>2. -----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, 돌봄, 건강, 주거,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·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.</li> </ol> <p><b>제3조(기본원칙)</b> ① ----- ----- 정책은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정책은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⑤ <u>시는 지역에 따른 격차의 수준,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결과에 따른 진전 수준을 공개한다.</u></p>	<p>⑤ <u>시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</b> (생략)</p>	<p><b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</b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조(시장의 책무)</b>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서울 시민복지기준의 달성, <u>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,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격차개선보고서의 작성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<u>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제5조(시장의 책무)</b> ① ----- ----- ----- <u>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삶의 질 향상에</u> ----- -----.</p>
<p><b>제6조(시민의 참여)</b> ① <u>모든 시민은 지역 여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전제로 지역에 따른 격차해소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<u>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제6조(시민의 참여)</b> ① <u>모든 시민은</u> ----- ----- -----,</p> <p>② ----- <u>삶의 질 향상에</u> ----- -----.</p>
<p><b>제7조(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)</b> ① <u>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7조(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)</b> ① <u>시장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8조(균형 잡힌 삶의 질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의 설정)</b> ① <u>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의 분야별로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제8조(목표의 설정)</b> ① ----- ----- <u>삶의 질 향상을 위해</u>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<b>제9조(실태조사)</b>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〈신설〉</p> <p>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격차 지표를 선정하고 이 격차 지표의 변화추이를 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10조(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</b></p> <p>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은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계획</li> <li>2. 『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</li> <li>3. 『지역보건법』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『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』에 따른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</li> <li>4. 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에 따른 주거복지기본계획</li> <li>5. 「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」에 따른 교육지원기본계획</li> <li>6. 그 밖에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종합계획</li> </ol> <p>③ 제2항의 분야별 종합계획에는 해당 분야의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격차지표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야는 별도의 격차해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9조(자료조사 및 결과공표)</b> ① ----- ----- 복지실태조사를 -----.</p> <p>② ----- 복지실태조사를 ----- -----.</p> <p>③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10조(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</b></p> <p>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수준이나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민·가구를 위한 집중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시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.</p>



#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9조(자료조사 및 결과공표)제3항, 제10조(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에 따라 비용 발생

※ 단, 제9조(자료조사 및 결과공표)제1항, 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의 경우, 해당사업을 서울시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

- 같은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 사업 [붙임] 참고

구분		사업명	세부내용
제9조	제1항 복지실태조사	서울시 복지실태 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	서울시의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의 격차 실태 조사 및 분석
제11조	제1항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	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	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민관협치 의제 사업 추진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[제9조(자료조사 및 결과공표)제3항 해당]

1) 추계결과 ≙ 165,000천원(연평균 33,000천원)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천원임

○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
- 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는 2020년 1회 발생 전제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2)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≙ 165,000천원

- 총비용 = 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0)	2차년도 (2021)	3차년도 (2022)	4차년도 (2023)	5차년도 (2024)	합계
	세입	-	-	-	-	-	-
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(제9조)	165,000	-	-	-	-	165,000
	소계(b)	165,000	-	-	-	-	165,000
	□ 총 비용(b-a)	165,000	-	-	-	-	165,000

○ 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 = 165,000천원

- 연평균 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 ≍ 33,000천원

· 자료 : 나라장터, 「통계정보 및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」, 2017

#### 나. 기술적 추계 곤란

○ 같은 조례안 제10조(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집중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이 발생하나, 사업 내용과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예산분석관 이정수

☎ 02-2180-7942

e-mail : intezer@seoul.go.kr

**붙임**

**사업명 :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**

**□ 사업내용**

- 연구기간 : 2018. 1월~2018. 12월(12개월)
- 연구내용
  - 서울시의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의 격차 실태 조사 및 분석
  - 서울시민의 지역별 복지수급 실태와 복지수요 비교 분석
  -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수준 격차 분석
  - 서울시 복지, 건강, 주거, 교육, 소득보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수립
- 총사업비 : 300,000천원

**□ 예산(안) 총괄**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		2019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계	(x-) 0	(x-) 0	(x-) 300,000	(x-) 300,000	(x-) 0
연구용역비	(x-) 0	(x-) 0	(x-) 300,000	(x-) 300,000	(x-) 0

**□ 예산(안) 산출근거**

과목구분	2017년 본예산	2018년 예산(안)
연구용역비		○ 연구용역비 300,000,000원 = 300,000천원
	증감사유	

자료 :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

## 사업명 :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

### □ 사업내용

- 위원회 기능 및 역할
  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·조정
  -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보장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·자문
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·의결
  -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등
- 개최시기 : 정기회(연4회), 임시회(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)
-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
-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구축
  -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민관협치 의제 사업 추진
  - 민관협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

### □ 예산(안)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		2019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계	(x-) 367,584	(x-) 367,584	(x-) 397,165	(x-) 29,581	(x-) 8
기간제근로자등보수	(x-) 46,604	(x-) 46,604	(x-) 47,985	(x-) 1,381	(x-) 2
사무관리비	(x-) 185,280	(x-) 185,280	(x-) 185,280	(x-) 0	(x-) 0
국외업무여비	(x-) 40,000	(x-) 40,000	(x-) 55,000	(x-) 15,000	(x-) 37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11,700	(x-) 11,700	(x-) 11,700	(x-) 0	(x-) 0
특정업무경비	(x-) 84,000	(x-) 84,000	(x-) 97,200	(x-) 13,200	(x-) 15

### □ 예산(안)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본예산	2019년 예산(안)
기간제근로자등보수	○ 복지본부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= 46,604천원 - 인부임 8,613원*14시간*4주*7명*12월 = 40,516천원 - 교통비	○ 복지본부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= 47,985천원 - 인부임 8,900원*14시간*4주*7명*12월 = 41,866천원 - 교통비



